

##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1995년 8월 10일

사회산업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달서구청장

나. 제출일자 : 95. 7. 31

다. 회부일자 : 95. 7. 31

라. 상정 및 의결

○ 제39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상정 : 95. 8. 9

·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의결 : 95. 8. 9

### 2. 제안설명요지(설명자 : 보건소장 박성득)

가. 제안사유

○ 보건 및 복지행정조직의 기능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통합하여 복지투자의 효율을 제고시키고 전문적이며 포괄적인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나. 관련근거

○ 사회 65000 - 504(95. 3. 29)시범보건복지사무소 조직 및 인력배치 지침

다. 주요골자

○ 복지관련 업무규정단서 신설

###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전문위원 : 허 면)

○ 본조례는 보건소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달서구보건소의 근거조례로 복지 수요가 많은 우리 구를 비롯한 전국 5개 시·군·구에 시범적으로 복지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보건소 업무를 기존 보건소법 제6조 규정외에 복지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으로써 복지프로그램개발 및 추진을 위한 새로운 전담기구 설치 등에는 각종 여건상 어려움이 많아 과도기적으로 보건행정과 연계추진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 원안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됨.

※ 관련조례안 심사 : 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내무위)

4. 질의답변 요지(답변자 : 보건소장 박성득)

- ▶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국비지원 여부와 지원시 규모는 어느정도 되는지?
- ▷ 국비 8,100만원이 지원되며 그중 7,800만원은 1회추경시 반영되어 있으며 300만원은 2회추경시 반영할 계획임.
- ▶ 업무이양에 따라 동에 근무하는 담당직원은 어디서나 근무하게 되는지?
- ▷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동에 출장 해당업무를 처리하게 됨.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반대없음)

7. 첨부 :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업무)	보건소는 보건소법 제4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	제3조(업무)	..... .....	..... ..... <u>다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실 시할 수 있다.</u>
	<u>&lt;신설&gt;</u>			